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차이나백마주뉴웨이브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변경시행일 : 2023.11.17

3. 정정사항

-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업데이트
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## [(간이)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요구· 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		
	아니오	정기갱신	-	- 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 (투자비용, 투자실적 추이, 운용전문 인력)
제2부. 집합투자기국	구에 관한 사	항		
5. 운용전문인력	아니오	기준일 현재 갱신	-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설>	- 증권 대여, 차입 주석 추가 <u>주1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</u>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운용 방법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 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)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가. 일반위험	아니오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신 설>	- 증권대차 거래위험 : 증권대차 거래위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아니오	정기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

14. 이익 배분 및	아니오	소득세법	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과세에 관한 사항		개정사항 반영	① 세액공제	① 세액공제
나. 과세			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	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
			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	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
			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	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
			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	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
			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	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
			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	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
			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12월31일	금액으로 합니다.
			까지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	
			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	
			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	
			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	
			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	
			<u>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</u>	
			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	
			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	
			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	
			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	
			는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	
			<u>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</u>	
			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	
			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	
			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	
			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	
			<u>다.</u>	
			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	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
			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	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
			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	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
			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	
	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<u>4천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
			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	
			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	· ·
			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	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			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	
			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	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
			※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	
			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"과세	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
			제도 안내"를 참조하여 주시기	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
			<u> 바랍니다.</u>	<u>주시기 바랍니다.</u>
			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	
			과세	과세
				- 수령요건 : 55세 이후 연간 연금
			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	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
			<u>수령</u>	
			- 세액공제 :	- 세액공제 :
			[납입금액]	[납입금액]
			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	-
			<u>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</u>	<u> 만원 이내</u>
			까지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	

			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	
			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	
			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	11 70
			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	<u>&lt;삭 세&gt;</u>
			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	
			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	
			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	
			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	
			<u>③</u> <생 략>	② <현행 3항과 같음>
			[세액공제]	[세액공제]
			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	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
			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	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
			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	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
			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 (근로소득	소득금액이 <u>4천500만원</u> 이하(근로
			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	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
			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	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
			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	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
			<신 설>	※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
				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
			- 분리과세한도 :	- 분리과세한도 :
			<신 설>	-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
				득은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
				연금수령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
				포함)
			  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	<del></del> 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
	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연금계좌 가입자가「재난 및 안전
				관리기본법」제66조제1항제2호의
				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
				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
제3부. 집합투자기구	L 그의 재무 및		l 과한 사항	
1. 재무정보	아니오	정기갱신 및	-	최근 결산기 기준 업데이트
2. 연도별 설정 및	1 1—	기업공시서식		(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
환매 현황		작성기준		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주석 추가)
3. 집합투자기구의		개정사항 반영		
운용실적		10.10 00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	L 그 관련히사O	L ll 과하 사항	<u>I</u>	
1. 집합투자업자에	아니오	기준일 현재	_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관한 사항	~1 ~1 ~	기군글 전세 갱신		그는 그 근 그에 따른 답네에트
다. 최근 2개 사업		01:		
연도 요약 재무				
연포 표측 제구     내용				
라. 운용자산규모	 비方론 이센	피이하 시하		
제5부. 기타 투자자			A As	>> 스이지초하이 겨이르 기워 지하
1. 투자자의 권리	아니오	주석 추가	<신 설>	※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
에 관한 사항				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
가. 수익자총회 등				경우 다음 각 호 외의 사유에 따른
(3) 수익자총회				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
결의사항				<u>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</u>
				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

		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
		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
		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
		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
		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
		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
		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.
		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
		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
		행위를 한 경우
		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
		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
		<u>를 발생시킨 경우</u>

<끝>.